의안번호	2203191
의 뢰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계번호	24D31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1조제2항제4호(휴직)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의무규정
2	안 제72조제7호(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을 자녀 1명에 대하여 현행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1조제2항제4호(휴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2조제7호(휴직기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Ⅲ. 미첨부 사유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범위 확대(안 제71조제2항제4호)

❑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1]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액이 70만원, 상한액이 15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을 상향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현행과 같이 하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2년 기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행정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총 14,181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이 54%인 7,657명, 남성공무원이 46%인 6,524명임[2]

❑ 다만, 현시점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육아휴직자 수 및 월봉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③~⑤ (생 략)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2022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2023.5.

2. 육아휴직기간 연장(안 제72조제7호)

❑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현행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규정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개정안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항목의 추가재정소요는 없으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해당 휴직자보다 높은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3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국가공무원 수, 해당 공무원의 월봉급액과 대체인력 월봉급액의 차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조사된 바 없으며, 민간부문의 근로자 기준으로는 평균 8.9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고용노동부의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여성 9.5개월, 남성 7.5개월)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